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수요예보제 · 분쟁조정제도 등 신설 … 제작자 보호 위한 서비스제공자 의무 규정 마련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정리 신종훈 기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의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등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수요예보제 실시와 e-러닝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활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정에서 복제 등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의 매개역할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정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또 피해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벅스뮤직 사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불법 복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기에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골자

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표시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용

어를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용어정의를 보완 및 신설함(안 제2조)

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개인 및 기업의 이러닝 도입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안 제3조)

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시행계획은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과학기술부, 농림부, 노동부 차관을 추가(안 제4조 내지 제5조)

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원격대학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수요진작을 위해 공공기관의 수요예보제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 e-러닝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의2)

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일과 표시일이 상이함으로 인해 온라인콘텐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제작연월일로 일원화하고,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규정(안 제17조)

사.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는 소송기간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과다소요, 입증책임의 곤란 등으로 영세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작자간 합의에 따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 및 알선제도를 도입(안 제19조의2)

아. 최근 P2P기술을 이용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가 불법 유통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 신설(안 제19조의3)

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복제 · 전송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규정 등을 신설(안 제19조의4내지 제19조의5)

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방지 및 시정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

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일부를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온라인게임, 모바일콘텐츠, 이러닝콘텐츠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을 "이와 관련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 제2조제9호중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제작 연월일"로 하고 "부가하는"을 "부가한"으로 한다.

▲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개인 및 기업의 이러닝 도입촉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로 하고 "심의를 거쳐 수립 · 추진해야 한다"를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20인"을 "25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차관 · 문화관광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 · 과학기술부차관 · 문화관광부차관 · 농림부차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 ·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의 "기관 또는 단체를"을 "기관 · 단체 또는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을"로 한다.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온라인콘텐츠의 수요예보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소관기관의 온라인콘텐츠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온라인콘텐츠 구매계획을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가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있어 그 교육훈련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 제17조제1항중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제작 연월일"로 하고, "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을 " 및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취지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누구든지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하고, "제작해 표시한"을 "제작하고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시한"으로 하고, "최초로 제작해 표시한"을 "최초로 제작한"으로 한다.

▲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분쟁조정) ①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의 조정 또는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 또는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 및 알선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 및 알선의 절차와 효력에 관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6조의2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시정명령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 또는 전송되는 온라인콘텐츠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복제물 등' 이라 한다) 부정복제물 등의 복제 ·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8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전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부정복제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자의 경우 삭제 등

2. 부정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당해 부정복제물의 삭제,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중지, 거부, 제한 등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주요부품의 경우 폐기, 서비스중단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건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부정복제물 등의 심의,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등은 온라인콘텐츠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 · 전송됨으로써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제작자임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 · 전송을 중단하고 당해 온라인콘텐츠를 복제 · 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온라인콘텐츠제작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해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 이라 한다)를 지정해 자신의 서

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⑤정당한 권한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해 온라인콘텐츠제작자등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등의 영업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과태료) ①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

▲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